

전체회의 발표자료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2019. 10.



환경부

1

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을 現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 (시행령 제2조 별표 1)

※ (기존) 수도권 → (확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추가

- (권역 설정원칙) 권역 관리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의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은(상위 30%) 지역 중심으로 설정

< 대기관리권역(안) 관리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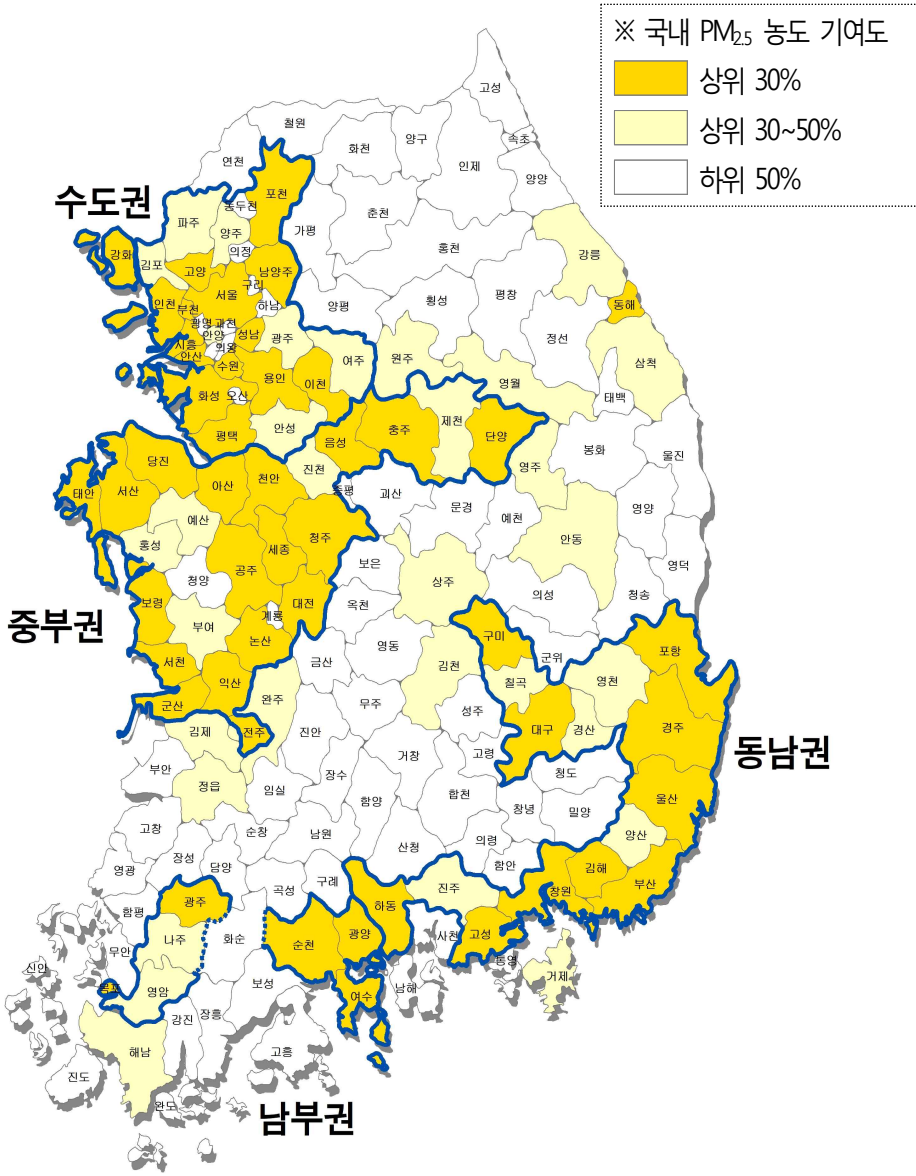
(%는 전국 대비)

| | 시·군 | 농도 기여율 (모델링 결과) | 배출량 ('16년 CAPSS) | 총량사업장 ('19년 기초조사) | 5등급 차량 ('19.6월 발표) | 인구 수 ('18년) | 국토 면적 ('18년) |
|--------------|-----|--------------------|---------------------|----------------------|-----------------------|----------------|-----------------|
| 권역 전체 | 77개 | 82% | 85% | 1,094개 | 78% | 88% | 38% |
| 수도권 | 30개 | 21% | 18% | 407개 | 33% | 49% | 9% |
| 중부권 | 25개 | 32% | 24% | 339개 | 15% | 13% | 14% |
| 남부권 | 7개 | 10% | 13% | 92개 | 6% | 5% | 4% |
| 동남권 | 15개 | 20% | 30% | 256개 | 23% | 21% | 11% |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안) >

| 권역 | 지역구분 | 지역범위 |
|--------------|---------|---|
| 수도권 (30개)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25개)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 | 세종특별자치시 | 전지역 |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7개)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15개) | 부산광역시 | 전지역 |
| | 대구광역시 | 전지역 |
| | 울산광역시 | 전지역 |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2

총량관리 대상

□ (적용대상)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한 해라도 연간 배출량이 SOx 4톤, NOx 4톤 또는 TSP* 0.2톤을 초과해서 배출한 사업장(수도권대기법 기준과 동일, 시행령 제18조 별표 2)

* 먼지(TSP)는 공통연소시설(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사용시설)에 한함(시행령에 명시)

○ 총량적용 대상 기준 및 배출량 산정 오염물질 명확화

[시행령 별표 2]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이다.

1. ~ 3. (생략)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황산화물과 먼지가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 제품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권역별 총량관리 대상사업장 및 배출구 현황]

(‘19년 기초조사 기준, 단위: 개, 개소)

| 권역 | 계(중복제외) | | 질소산화물 | | 황산화물 | | 먼지 | |
|------------|--------------|--------------|------------|--------------|------------|--------------|------------|------------|
| | 사업장 | 배출구 | 사업장 | 배출구 | 사업장 | 배출구 | 사업장 | 배출구 |
| 계 | 1,094 | 7,499 | 983 | 6,891 | 358 | 3,026 | 357 | 998 |
| 수도권 | 407 | 2,708 | 369 | 2,565 | 83 | 469 | 109 | 197 |
| 중부권 | 256 | 1,474 | 237 | 1,394 | 76 | 613 | 109 | 364 |
| 남부권 | 92 | 908 | 89 | 861 | 47 | 612 | 39 | 127 |
| 동남권 | 339 | 2,409 | 288 | 2,071 | 152 | 1,332 | 100 | 310 |

[권역별 오염물질별 배출량 현황]

(단위 : 개, 톤)

| 권역 | 사업장수 | | | | 통합 허가대상 | 오염물질 배출량 | | | |
|------------|--------------|-----|-----|-----|------------|----------------|---------|---------|-------|
| | 계 | NOx | SOx | TSP | | 계 | NOx | SOx | TSP |
| 계 | 1,094 | 983 | 358 | 357 | 640 | 415,357 | 284,442 | 126,708 | 4,207 |
| 수도권 | 407 | 369 | 83 | 109 | 213 | 35,109 | 25,676 | 9,126 | 307 |
| 중부권 | 256 | 237 | 76 | 109 | 151 | 151,152 | 108,388 | 40,713 | 2,051 |
| 남부권 | 92 | 89 | 47 | 39 | 62 | 85,623 | 52,667 | 32,365 | 591 |
| 동남권 | 339 | 288 | 152 | 100 | 214 | 143,473 | 97,711 | 44,504 | 1,258 |

* 총량사업장의 총 배출량(오염물질 배출량 총합)은 전국 1~3종 대비 약 70% 수준

3

허가 및 신고

□ 허가, 변경허가

- 허가(신설) 및 변경허가(증설·폐쇄 등) **사유 발생시** 신청(시행규칙 제8조)
- 연간 배출량이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청 (시행규칙 제8조)

□ 기존 사업장 허가 의제처리 및 신고

- (확대 권역내 대상 사업장)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20.7.2.)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 허가의 제한

-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 허가 불가.** 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 가능** (법 제16조)

※ 기초조사표의 배출시설 증설 계획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내 지역배출총량에 일부 반영 예정**

4

배출허용총량 할당

□ 할당 시기

- (허가신고시)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적어 발급** (시행규칙 제11조)

※ 확대 권역 총량사업장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허가증 발급('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
수도권역의 기존 총량사업장은 기존 할당기간·할당량 유지 (법 부칙 제7조)

- (차기 할당시) 배출허용총량 **할당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행규칙 제11조)

□ 할당 방법 : 수도권대기법 할당방법 적용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 (초기연도)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

* 신규 총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근연도 단위배출량(=배출량/연료사용량) 사용

- (최종연도) 5년 할당 기간 중 **최적방지시설(BACT)의 설치를 통해 달성 가능한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
 - 수도권에 없는 배출시설의 경우 BACT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통합허가제도 농도 기준과 정합성 고려하여 BACT 조정(시멘트, 석회, 1차 금속 제조시설,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등)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 8)의 예외적용 대상 시설의 경우, 예외 기준 대비 50% 수준과 최종연도 BACT 중 더 높은 기준을 적용
 - 초기연도 할당계수 < 최종연도 할당계수인 경우, 최종연도 할당계수 = 초기연도 할당계수 (5년간 할당량 동일)
- (중간연도) 최종연도 할당량까지 선형으로 비례해서 할당

※ 차기 5년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에는 BACT 기준농도로 초기할당계수 산정**

○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의 예외 적용 명시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1. 굴뚝자동측정기기 또는 자가측정에 의해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나목의 방법으로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를 산정한다.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할당기간 중 폐쇄가 예정된 배출시설의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한다.
3.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최초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배출시설의 초기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한다.
4. 3호에 따라 산정한 초기 할당계수가 최종 할당계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초기 할당계수를 최종 할당계수로 한다.

- (지자체 협의) 지자체가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하여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신뢰성 제고 (시행규칙 제14조)

5

TMS 부착

- 총량관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총량관리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 TMS 부착 원칙 (법 제17조제5항)
 - 물리적 특성 및 규제비용 대비 실효성 등을 고려, 다음 배출구는 제외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3)

[시행령 별표 3]

- 1) ~ 4), 6) 수도권대기법 규정과 동일
- 5)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최근 연간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배출구
 - 가)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
 - 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
 - 다)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

비고

- 1. ~ 3. (생략)
- 4.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부착 예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예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5. 제1호 가목의 부착 예외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3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부착 시기) 확대 권역 대상사업장은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권외의 기존 총량관리사업장 중 부착 대상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부착

[전체 권역 TMS 부착대상 배출구 및 배출량 현황]

(단위 : 개소, 톤)

| | 계(중복 제외) | | NOx | | SOx | | TSP | |
|-----------|--------------|---------------------------|--------------|---------------------------|------------|---------------------------|------------|-------------------------|
| | 배출구 | 배출량 | 배출구 | 배출량 | 배출구 | 배출량 | 배출구 | 배출량 |
| 전체 배출구 | 7,499 | 415,357 | 6,891 | 284,442 | 3,026 | 126,708 | 998 | 4,207 |
| TMS 관리 대상 | 3,045 | 412,234 (99.2%) | 2,779 | 282,095 (99.2%) | 887 | 125,937 (99.4%) | 714 | 4,202 (99.8%) |
| 기 부착 | 1,146 | 267,056 | 1,072 | 161,939 | 340 | 101,706 | 501 | 3,411 |
| 신규 부착 | 1,899 | 145,178 | 1,707 | 120,156 | 479 | 24,231 | 213 | 790 |
| TMS 부착 제외 | 4,454 | 3,123 | 4,112 | 2,347 | 2,139 | 771 | 284 | 5 |

6

특 례

- (배출부과금 특례) **1~2종 총량사업장**에 대한 **농도 완화 특례조항 삭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기본배출부과금만 면제** (시행령 제21조제1항)
 - ※ 적용시점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부터 적용
- (황함유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 기준 미적용** (시행령 제21조제2항)
- (농도 특례) **3종 총량사업장**에 한하여 수도권대기법과 동일하게 **130% 농도 완화 특례** 적용 (시행규칙 제19조)
 - ※ 3종 사업장은 완화된 농도기준을 기준으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총량사업장 대상 특례 비교]

| 구 분 | 수도권대기법 | 대기관리권역법 |
|-----------|--------------------------|-----------------------|
| 배출부과금 특례 |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초과배출부과금 면제 | 기본배출부과금만 면제 |
| 황함유 기준 특례 | 기준 미적용 | 기준 미적용 |
| 농도 특례 | 130%까지 완화 (1~3종 사업장) | 130%까지 완화 (3종 사업장) |

7

배출허용총량 이전

- (이전의 범위) 권역별 대기개선 목표가 수립* 되는 점을 감안, 배출권 거래는 **총량관리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거래 가능** (시행규칙 제22조)

8

총량관리사업장 관리

- (권역 관리 총괄) 유역청·수도권청에서 해당 권역 관리 총괄*
 - * 권역 기본계획 수립·관리, 권역 배출허용총량 관리,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운영 등
- (사업장 허가·할당) 아래 시설은 환경부에서 허가·총량할당(그 외 시설은 지자체에 위임)
 - ①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②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③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
 - * 통합허가 사업장과 동일한 환경전문심사원에서 허가·할당 기술검토 일원화
- (사업장 지도·점검) 모든 환경청에서 관할 내 사업장 지도·점검*
 - *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통합허가 사후점검과 연계), 개별사업장 배출량 확인 등